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0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김기표 · 김승원 · 이연희
김남희 · 문진석 · 한민수
권칠승 · 박지원 · 백혜련
문금주 · 최혁진 · 신영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이 농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가 불일치하여 적기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착물”을 “정착물(이하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의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손실보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있는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의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손실보상) 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u>정착물</u> 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 ① ----- ----- ----- ----- ----- -----정착물(이하 “ <u>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u> ”이라 한다)----- ----- ----- -----.
②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u>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u> 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	② ----- ----- ----- ----- ----- -----손실보상대상 건축물 등----- ----- ----- -----.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손실보상대상 건축물등의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손실보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